

# 충청북도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증개정조례안 심사보고

1998. 4.28  
교육사회위원회

## 1. 심 사 경 과

- 가. 제안일자및제안자 : 1998년 4월 16일 (충청북도지사 제출)
- 나. 회부일자 : 1998년 4월 16일
- 다. 상정일자 : 1998년 4월 27일  
(제147회임시회 제3차교육사회위원회) 상정 심사의결

## 2. 제안설명요지 (사회복지국장 장상자)

### 가. 제안이유

- 충청북도여성회관의 시설사용 및 전문기능인교육 수강을 신청한 후 사용  
· 수강을 포기할 경우, 사용료 및 수강료를 반환하고자 관련규정을 개정

### 나. 주요골자

- 시설사용료와 수강료를 수입증지로 납부하던 것을 납부고지서로 납부 (안 제6조)
- 시설사용료 및 수강료 반환 조항 신설 (안 제7조)
  - 여성회관의 귀책사유시 전액반환,
  - 사용·수강일 15일 이전 신고시 전액반환, 7일 이전 신고시 10% 공제후 잔액반환, 7일 이내 신고시 20% 공제후 잔액반환

### 3. 검토보고 요지 (전문위원 김영만)

○ 충청북도여성회관의 시설사용료 및 수강료 반환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시료되나

안 제6조의 수입증지 납부와 납부고지서 납부외의 장단점 비교검토와

안 제7조의 당해월을 제외한 잔여월의 해당금액의 산출방법 등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함

4. 질의및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요지 : 없음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### 9. 첨부서류

○ 충청북도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

○ 신구조문대비표